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6호]

개정 2004. 3. 5 조례 제 108호
개정 2005. 10. 19 조례 제 172호
개정 2006. 8. 24 조례 제 202호
개정 2007. 5. 11 조례 제 233호
개정 2008. 1. 11 조례 제 273호
개정 2008. 12. 26 조례 제 313호
일부개정 2011. 10. 14 조례 제 393호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 568호
전부개정 2015. 11. 20 조례 제 642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6. 12. 23 조례 제 724호
일부개정 2017. 3. 31 조례 제 737호
일부개정 2017. 11. 24 조례 제 777호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4호
일부개정 2019. 12. 26 조례 제 906호
일부개정 2020. 12. 18 조례 제 949호
일부개정 2021. 12. 28 조례 제1010호
전부개정 2022. 4. 15 조례 제1029호
일부개정 2023. 7. 7 조례 제10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증평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: 「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. 다만,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2. 여비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한 금액

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23. 7. 7>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 <신설 2023. 7. 7>

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증평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
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 <신설 2023. 7. 7>

부칙(2022. 4. 15 조례 제1029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7. 7 조례 제109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